

# 開港 以後 釜山과 日本

— 학술심포지엄 발표요지 —

姜 大 敏

(慶星大學校 教授)

1. 머리말
2. 日本의 單獨租界設定 經緯
3. 日本 租界地의 擴大企圖
4. 日本 租界內에 設立한 經濟浸透機構
5. 釜山地方民의 抗日鬭爭
6. 맺음말

## 開港 以後 釜山과 日本\*

### — 日本租界 設置를 中心으로 —

#### 1. 머리 말

일본의 砲艦外交에 의해 우리나라는 문호가 개방되고 江華島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해 朝鮮王朝가 日人들에게 施惠를 베풀기 위한 善隣友好政策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던 釜山草梁倭館이 釜山 日本專管居留地로 개방되었다. 이 전관거류지의 설정은 우리나라에서의 租界의 효시이며, 그 후 일본은 원산, 인천 등에도 단독의 거류지를 설정하였다.<sup>1)</sup> 전관거류지는 一般外交人居留地와는 달리 一個國家의 국민만이 거주하여 商行爲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전관거류지에는 원칙적으로 타국민이 들어가 거류할 수 없는 곳이다. 이와같은 전관거류지를 우리나라에 가진 나라는 일본국과 청국 두 나라 뿐이었다. 그러나 두나라는 침략의 機先을 제압코자 對立反目하여 角逐戰을 벌이다가 청국측은 1895년 淸日戰爭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의 전관거류지는 사실상 제대로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 일본은 在日本勢力의 확대방법으로서 전관거류지를 부산 개항장에다 설정하여 거류일본인들에게 營業規則과 營業種目까지 정하고 治外法權의 特惠下에서 商權占有까지 누리도록 했다. 따라서 부산 일본전관거류지의 설정은 침략세력의 前哨基地化를

\* 부산포 승전 400주년 학술심포지엄 제4주제 발표요지임.

1) 租界나 居留地라는 용어는 대개 같은 것으로 사용되어 中國-韓國은 租界로 日本은 居留地라고 사용하고 韓國도 일제침략이 노골화된 1890년대부터는 租界와 居留地를 混用하여 사용하였다.

위한 거점을 마련한 셈이며, 이 거점을 발판으로 일본은 對朝鮮·大陸侵略을 추진해 갔다. 이를 위해 일본은 우선적으로 부산의 전관거류지에 일본인의 移民政策을 실시하고 商品市場 확대에 주력하였다. 그러므로 개항이후 부산과 일본과의 관계의 규명을 위해서는 부산전관거류지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大陸侵略橋頭堡로서의 일본전관거류지의 설정경위, 이 거류지를 구심점으로 租界地 및 租借地의 확대 과정과 그 내용, 경제침투를 위한 기구의 설립 및 활약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부산지방민의 저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日本의 單獨租界設定 經緯

租界란 외국인이 그들의 居留地區 안의 경찰 및 행정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지역을 말한다. 조선의 조계 설정의 법적 근거는 1876년 2월 27일에 체결된〈江華島條約〉 제4관·5관에 마련되어 있다.<sup>2)</sup> 거류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모든 기초는 동년 8월 24일에 조인된 동 조약 부록에 명시되어 있다.<sup>3)</sup> 이를 근거로 일본측은 먼저 개항장 부산의 조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동래부사 洪祐昌은 1876년 12월 12일부터 일본측 대표인 관리관 콘도우(近藤眞鋤)와 몇차례 회동하여 협의한 결과 1877년 1월 30일에 소위 〈釜山港租界條約〉을 체결하였다.<sup>4)</sup> 이로써 부산에 최초로 일본의 단독 조계인 日本專管居留地가 설치된 것이다.

2) 《旧韓國外交文書》1卷 日案, p. 1.

3) 《旧韓末條約彙纂》上卷, p. 17.

4) 《旧韓末條約彙纂》中卷, p. 1.

그 조약의 중요 부분을 요약하면, 첫째 조계지의 면적은 舊館(草梁倭館)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둘째 조계지의 지조는 50圓으로 정하고 납입방법은 1년전에 豫納하기로 하였고, 셋째 거류지설정 후의 地基·道路·溝渠는 일본정부가, 船艙은 조선국 정부가 각각 유지 관리한다는 것 들이다. 따라서 부산의 일본전관거류지는 草梁倭館의 땅을 계승한 것으로 그 경계는 서쪽은 220間餘, 북은 179間반여, 동은 340間 7畝 5方, 남은 415間 2畝 5方 길이의 부정형의 사각형을 이루었다. 중간에 龍頭山이 솟아 있고 동남 두면이 해면에 접하며, 총면적은 약 11만평이었고,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지불하는 지조는 연액 50원이었다.<sup>5)</sup> 사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초량에 있었던 왜관은 사신 또는 공적 상인들을 위한 임시적 숙소의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상주의 터전은 아니었다. 그리고 <강화도조약>이나 동 조약 부록의 어느 조항에도 구 초량왜관의 客館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변경시키지는 않았다. 그 부지를 양도해 준 사실도 없고 임차를 인정해 준 사실도 없었다. 왜관 건물의 대부분은 조선정부가 건축하였으므로 그 소유권도 당연히 조선국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부산항조계조약>에서는 갑자기 일본공관을 단순한 공관이 아닌 거류지로 설정해 버린 것이다. 부산에 이어 3년 후인 1879년에 원산, 다시 4년 후인 1883년에는 인천에 일본전관거류지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일본측은 1880년 2월에 이르러 개항이후 거류민 보호·관리 및 통상사무를 관장했던 관리관청을 영사관으로 개명하고 영사를 주재시켰다. 영사관이 설치된 직후 영사가 告示한 <釜山日本國專管居留地 地所貸渡規則>에 의하면<sup>6)</sup> 부산일본전관거류지 내의 地所는 일본인에 한하여 借用할 수 있고, 地所借用者는 그 권리를

5) 《釜山市史》第1卷, p. 800.

6) 《釜山府史原稿》第12卷 第1章.

일본인에 한하여 讓與 또는 貸與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지어 그 상속·양도, 지권의 등기에 관해서 課稅와 手數料까지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조선의 租稅徵收權을 명백히 침해한 처사이며, 이 지역을 일본의 기득 영토로 간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sup>7)</sup> 그리고 일본정부는 이 지역을 비단 관용지로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3분의 2는 자기들 거류민에게 配借地라는 명목으로 영구 전대하고 영사가 地卷을 발행하였다. 또한 거류지 내의 가옥을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본영사에게 보고하여 그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배차지의 지권 발행권은 일본 영사가 독점하고 조선정부의 稟書가 불필요한 것이었다. 중국의 전관조계에서는 영사발행의 지권은 중국정부의 이서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통례였던 점과 비교하면, 부산의 일본전관거류지는 중국조계의 경우보다 훨씬 국가주권을 침해당했다. 그리고 <부산항조계조약>에 의해 일본영사가 장악한 행정권은 실제로 거류지내의 道路·溝渠 등 토목사업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일본영사는 부산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의 營業·商事·土地·家屋·人事·教育·警察·衛生·病院·船舶 등에 관한 諸規則을 제정·실시하므로써 그의 행정권은 지방행정사무 전반에 미쳐, 부산 일본조계는 실제적으로 일본영토와 다름없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일본 정부는 개항초기부터 거류민 증가를 예상하여 도로망을 계획하고 가옥의 구조를 규제하는 등 식민지적 街區를 착착 형성해 갔다. 요컨대 그들은 거류지 내에 영사관 건물을 중심에 세우고 그 둘레에 경찰서, 은행, 병원, 상업회의소, 전신국 등 공공건물을 차례로 배치하여 일본의 시가지를 방불케 하는 거류지 시가를 형성해 갔다. 이

7) 金容旭, <釜山開港의 比較史的 意義> 《港都釜山》 第5號, p. 302.

것이 오늘날 부산의 중구 동광동, 광복동, 창선동, 신창동 등 사실상 부산의 중심을 이루는 지구의 원형이 된 것이다.<sup>8)</sup>

### 3. 日本 租界地의 擴大企圖

개항직전 부산의 일본인 거주자는 총 82명에 불과하였으나 1879년 경에는 1400명내지 1500이나 된 것을 볼 때 거주지의 확대는 물론 通行區域의 확대도 일본측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 영토내에서 일본인의 이주를 통한 일본세력의 부식처가 되고 일본상품의 시장화가 된 開港場의 通行구역 확대는 한국침략을 위한 일본의 급선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항조계조약>의 체결이 논의될 때 가장 쟁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間行里程의 범위이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 通行制限規定은 <朝日修好條規附錄>第4款에서 「嗣後於釜山港口 日本國人民 可得間行道路里程 自埠頭起算 東西南北直徑十里(朝鮮里法)爲定 至於東萊府中 一處 特爲往來 於北里程內 日本國人民 隨意間行 可得賣買土宜及日本國物產」<sup>9)</sup>라하여 釜山港에 있어서는 東西南北으로 韓國里數 10里에 한해서 通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후 1882년 8월 30일에 다시 <朝日修好條規續約>을 체결하고 새로 通行구역을 규정하였다.<sup>10)</sup> 즉 釜山·元山·仁川 各港의 間行里程은 금후 확장하여 四方 各 50里(韓國里數)로 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各 100리로 한다는 것이다.

8) 孫禎睦,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 p. 100.

9) 《旧韓末條約彙纂》上卷, p. 20.

10) 《旧韓國外交文書》1卷 日案, p. 69.

그런데 일본측은 다시 1883년에 <議訂朝鮮國間行里程約條>를 체결하여<sup>11)</sup> 인천·원산·부산 3항구에서의 여행통행구역을 대폭적으로 확장한 다음 違法者에 대해서는 일본법률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治外法權을 인정해 주는 또 하나의 우를 범한 것이다. 본 조약에 규정된 부산항에 있어서의 일인의 間行里程은 다음과 같다.

東쪽 限界 機張, 西쪽 限界 金海, 南쪽 限界 鳴湖, 北쪽 限界 梁山 위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조일수호조규속약>에서 규정후 2년도 못 된 불과 1년 반 만에 50리가 100리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里數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隣接郡別로 하되 標木만 세우고 있다. 또 다시 일본측은 1884년 11월 29일에 <朝鮮國間行里程約書附錄>을 조인하여<sup>12)</sup> 통행구역의 확대를 기도하였다. 즉 동쪽은 南倉, 서쪽은 昌原, 馬山浦, 三倉, 남쪽은 天城島(加德島), 북쪽은 彦陽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通行制限區域도 1894년 淸日戰爭을 계기로 하여 무시되면서 사실상 死文化한 규정이 되었다. 그것은 戰爭을 빙자하고 일본의 군사행동이 확대됨에 따라 戰略上 필요한 곳을 마음대로 占有 基地化하고 戰鬪地化하기 때문이었다.<sup>13)</sup> 한편 租界 이외의 지역에서도 日本人으로서 토지를 소유하며 가옥을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 놓았다. 이는 한일양국간의 조약에는 없었으나 1883년 11월 26일의 <朝英條約> 第4款 4項에 「如英人欲行永租 或暫租地段 賃購房室 在租界以外者 聽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朝鮮里)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

11) 《旧韓末條約彙纂》中卷, p. 49.

12) 《旧韓末條約彙纂》中卷, p. 52.

13) 李鉉淙, 《韓國開港場研究》, 一潮閣, 1979, p. 154.

住納稅各事 應行十律遵守朝鮮國 自定地方稅課章程」<sup>14)</sup>라하여 租界外 10 里以內的 토지를 外國人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가옥의 賣買 · 貸借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규정을 일본측은 〈韓日貿易規則〉 第42款의 最惠國條項에 적용시켜 特惠措置를 받았다.

이로써 일본은 부산에 있어서 그들의 租界地擴大企圖에 장애물이 되었던 법적 제한 조항을 제거해 버렸다. 일본측의 조계지 확대 기도는 우선 租界地를 강화하는 면부터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年代順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 ① 1876년 5월 19일 : 〈官舍貸渡規則〉을 시행하여 倭館중 管理廳所有 建物の 일부를 일본인에게 借用 拂下하였다.
- ② 1876년 11월 22일 : 개항직후 일본관리청 내에 그들의 郵便局을 설치하였다.
- ③ 1878년 1월 21일 : 일본인들의 경제적 침투에 있어서 동맥이 되었던 日本 第一國立銀行 釜山支店을 설치하였다.
- ④ 1879년에는 조계내의 洞名을 획정하였다. 즉 龍頭山과 龍尾山(현 시청자리)간을 東館이라 칭하고 이 토지를 둘로 구분하여 第一區를 本町 · 常盤町 · 辨天町, 第二區를 入江町 · 幸町이라 하였다. 한편 西館은 西町으로 一區一洞이었다.
- ⑤ 1880년 2월에는 日本領事館이 개설되고 〈地所賃渡規則〉을 告示하여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다.
- ⑥ 1880년 7월 13일 : 일본영사는 조계지 주변의 일부의 땅을 동래 부사와 상의하여 조계지에 편입시키고, 이 신조계지를 北濱町이라 명명하였다.

14) 《高宗實錄》 卷之十九, 壬午年 四月二十二日.



- ⑦ 1888년 6월 13일 : 本町・辨天町 방면의 발전으로 從前 일본인에게 대여한 토지인 本町 토지를 道路 敷地로 회수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交通편리를 도모하였다.
- ⑧ 1890년에는 市街地의 건설을 위해 西町 方面에 대여한 일본인의 空地를 회수하였다.
- ⑨ 1891년 6월 10일 : 조계내의 재건축에 소요되는 石材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영사는 東萊監理로부터 赤崎半島의 石材採取許可 얻어 냈다.
- ⑩ 1892년에 일본정부는 伏兵山墓地를 일본인의 先占과 〈丙丁·修好條規〉에 의거한 묘지조문으로 일본조계의 부속지로 확보했다.
- ⑪ 1901년 4월에 부산조계내의 토지를 5種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그 면적을 책정하였으며, 일본인 민유지를 4등급으로 설정하였다.
- ⑫ 1908년 10월 19일에는 조계내에 市街道路區를 시행하고, 1909년 5월 12일에는 일본측의 필요에 의해 洞名과 區域을 變便·新設하였다. 絶影島(현재의 影島)의 市街區劃도 실시하였다.<sup>15)</sup>

다음에는 租界외의 토지 확대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측은 부산에다 전관거류지를 설치한 다음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絶影島에 領土租借를 시작했다. 1886년 1월 31일에 조인된 〈租借絶影島地基約單〉에 의하면,<sup>16)</sup> 일본은 海軍用 石炭貯藏倉庫建立을 위하여 4,900坪을 조차하고 그 租借地의 地租로서 매년 銀貨 20圓을 日本公使館에서 조선정부 統理衙門에 지불토록 규정하였다. 이는 부산에다 설정한 전관 단독조계만으로는 侵略基盤을 닦는 데 충족할 수 없어 大陸侵略의 基

15) 《官報》《韓國二大港實勢》《釜山府使原稿》 등에서 관련된 사료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16) 《旧韓末條約彙纂》中卷, p. 14.

地를 만들고자 주요한 지역에 軍事施設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은 부산 앞바다 절영도에 합법적인 軍事基地를 확보하였다. 1896년경 부터는 일본민간인의 절영도 내 토지매점 현상이 두드러져 일본인의 토지 매매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 온 섬안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동래감리의 보고가<sup>17)</sup>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자마(迫間房太郎)로 그는 1898년에 절영도 국유지 135만평을 정부로부터 植林貸付 형식으로 허가 받아 그 중 75만평은 일본 육군성의 요새지용으로 회수당하고 60만평은 해방 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sup>18)</sup> 1903년도의 절영도 전역의 외국인 소유가 된 토지는 386필지 1,422斗落에 달했는데, 그 중 서양인 토지는 불과 13필지 95.1斗落에 불과하고, 일본인이 373필지 1,326.9斗落을 소유하여, 절영도 전역의 노른자위 땅은 일본인들이 거의 侵佔해 버렸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이 그들의 資力으로써 현지인을 유혹하여 地契를 마음대로 양도하는 등 우리의 관헌 몰래 팔기도 하고 또 日人에 대한 傷務를 辨濟하기 위하여 抵當한 土地·家屋이 傷務不履行을 口實로 또한 일본인의 手中으로 넘어 간데 있었다.<sup>20)</sup>

부산의 일본인들이 침점한 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절영도 뿐만 아니라 專管居留地를 중심으로, 서쪽은 대청·보수·부민동 일대, 동쪽은 영주·초량·수정·좌천·범일동 일대를 거쳐 광범위하였다. 이들 토지들은 暗賣·抵當의 形式을 취해 일본인에게 移轉된 경우도 있고, 우

17) 《東萊港報牒》1책, 建陽元年 9月 23日 報告.

18) 高秉雲, 《近代朝鮮租界史의 研究》 雄山閣, 1987. p. 63.

19) 孫禎睦, 앞의 책, pp. 252~253.

20) 金容旭, 〈釜山開港의 比較史的 意義〉, 《港都釜山》第5號, p. 288.

리나라의 指導層에 있었던 者가 大量의 토지를 정부로 부터 下附받아 이를 다시 일인의 手中에 양도시킨 公公然한 토지의 賣買·去來의 경우도 있었다. 이리하여 1905년 경에는 일본인이 부산에서 소유한 토지는 전관거류지 내 11만평, 거류지의 5,381,714평(공용지 1,000,000평, 민유지 4,350,000평, 매립지 31,714평)에 달한다고 했다. 따라서 러·일 전쟁이 끝나기 전에 부산 시내 요지는 거의 대부분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sup>21)</sup>

#### 4. 日本 租界內에 설립한 經濟侵襲機構

부산항 개항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租界內에 설립된 경제침투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개항 직후이며, 개항 전부터 초량왜관을 거점으로 무역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은 <강화도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했다. 개항 이후 부산항에 일본상인이 대거 진출하자 일본인 실업가 시부자와(澁澤榮一)와 오쿠라(大倉喜八郎)는 자본금 5만원을 공동출자하여 사설 제일은행을 설립했다.<sup>22)</sup> 이것이 한국내에 설립된 최초의 일본인 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1878년 6월에 폐점되고 대신 국립제일은행 부산지점이 일본조계내에 설치되었다. 설치의 주된 목적은 日本通貨를 조선에 유통시키고, 조선의 金을 매입하는데 있었다. 제일은행은 일본에서는 보통 상업은행이었으나 한국에 진출한 제일은행은 일반 은행업무 외에 특수업무 즉

21) 《釜山市史》第1卷, pp. 814~818.

22) 趙璣瀟,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1977.

관세업무를 위탁받았다. 1884년 2월에 제일은행 부산지점 주임인 오하시(大橋半七郎)와 朝鮮總稅務司 밀렌돌프(穆麟德)사이의 〈海關稅取及條約〉이 체결되면서 업무가 개시되었다.<sup>23)</sup> 이 조약은 일인의 무역업에 대단히 편리하게 작용하였다. 부산에는 제일은행 외에도 다수의 일인 은행이 진출했는데, 이들 은행 부산지점의 대출금이 연안무역을 포함한 수출입액의 2배나 되었으며, 이들 은행 이용자는 일인 상인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다.<sup>24)</sup> 이는 이들 은행이 부산의 무역을 주도하여 그들의 경제적 침투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은행과 더불어 경제적 침략을 위한 團體로 일본상인들의 조직체인 〈釜山港日本人商法會議所〉의 설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항직후 일인상인들은 일본인 조계내에 〈居留地商會議所〉라는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1879년 8월에 〈부산항일본인상법회의소〉를 설립하였다. 이 회의소는 처음에 부산에 있는 일본인 무역상·은행업·해운업·도매업 등 4개 영업자로 조직하였으나 1885년에는 조직을 개편하여 모든 일인상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1890년 6월부터는 잡화상까지 회원으로 가입시켰다.<sup>25)</sup> 이 회의소의 사업은 상인단체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 외에, 일본 정치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 일본 국내 상업회의소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일, 일본인에게 불리한 상거래가 있으면 일본의 무력을 이용하는 일 등이었다. 그 사업의 방향과 목적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부두축조·일본화폐 통용, 斗衡用器사용, 중국·만주 등지와 무역을 촉진하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결국 식민지

23) 村上勝彦, 〈第一銀行朝鮮支店と植民地金融〉《土地制度史研究》61號, 1973.

24) 《釜山市史》第1卷, p. 840.

25) 趙璣濬, 〈開化期 日帝의 經濟侵略〉《日本の 侵略政策史研究》, 一潮閣, 1984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었다.<sup>26)</sup> 이 회의소의 막강한 후원세력으로는 <朝鮮人實業協會>가 있었다. 이 협회는 1904년 11월 부산에서 설립된 일본인 실업단체인데, 그 집행부는 유력 실업가나 저어널리스트로서 당시 조선에 거류하던 일본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이 협회는 막대한 권력과 자본으로 조선 거류 일본인에게 대 조선 경제개발이나 조선인 동화의 역할을 실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7)</sup>

다음에는 水産業分野에 대해 살펴보자. 개항 이후 일본인이 부산연안의 通漁權을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어업을 시작한 것은 1883년 7월 25일 <朝日通商章程>의 체결 이후 이다. 물론 이 장정 체결 이전에도 많은 일본인이 부산연안에서 어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密漁였기 때문에 크게 성행하지는 않았으나 이 장정의 체결로 밀어가 합법화되어 일본인의 부산연안 어업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장정의 체결과 동시에 <日本人漁探犯罪條規>를 체결하여 예상되는 범죄발생에 대비하여 그 보호 규정을 설정해 놓았다. 그 후 1889년 11월 12일에는 <朝日通漁章程>을 조인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漁業稅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처벌 규정이 너무나 관대하는 등 부당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통어 장정에서 주목할 것은 領海 3海里 원칙이 조선·일본간의 어업에 적용된 것으로 동양에서는 최초로 있었던 일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컸다.<sup>28)</sup> 이리하여 일본인들은 어자원이 풍부한 남해안과 부산지방으로

26) 《釜山市史》第1卷, p. 57.

27) 木村建二, <近代日朝關係下の 在朝日本人—朝鮮實業協會の組織と活動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3, 1986.

28) 朴九乘, <李朝末 韓日間の 漁業에 적용된 領海 3海里 原則에 관하여> 《경제학연구》 22집, 1974. pp. 24~25

의 진출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 되었다. 결국 1908년에는 일본인들은 <漁業에 관한 協定書>를 조인하고 조선 정부로 하여금 <朝鮮漁業法>을 제정 공포케하여 일본인도 조선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조선의 연해 및 내수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말았다. 결국 일본인은 이 법에 의해 通漁稅를 납부하지 않고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확립하여 일본인에 의한 정치어장을 비롯한 연안어업권 어장의 탈취를 합법화했다. 이러한 일본어업을 보호·조장하기 위해 1898년 8월에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 중 몇몇 유지들에 의해 자본금 5만원으로 <釜山水產會社>가 설립되었고, 1900년 5월에는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가 조직되어 일본어민의 부산연안 침입을 더욱 조장하였다.<sup>29)</sup>

## 5. 釜山地方民의 抗日鬭爭

개항 후 일본의 조계를 중심으로 일본상인에 의해 관세 없이 機械製商品 즉 服地를 비롯한 日常生活必需品이 자유로이 多量으로 輸入됨에 따라 부산주변의 農村家内手工業과 都市手工業이 점차 해체되고, 또 국내적으로 加重되어가는 封建的 收取로 부산지방민의 경제생활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다 일본국가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 일인들의 횡포와 불법은 부산지방민의 저항심을 촉발시켰다. 부산지방민들이 일본에 저항했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 ① 개항과 더불어 전개된 無關稅貿易과 關稅權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정부당국자는 관세권 회복의 시도로 개항장인 부산에 海關을

29) 《釜山市史》第1卷, p. 860.

설치하고, 대일무역에 종사하는 국내상인에게 일정률의 세금을 징수키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1878년 9월 28일부터 부산 豆毛嶺에 해관을 설치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세목을 정하여 해관수세를 실시하였다. 이 과세제도는 대일 무역에 종사하는 국내상인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관세라고는 볼 수 없고, 무역품에 대한 내국통과세 또는 일종의 무역거래세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sup>30)</sup> 관세징수 조처로 인해 부산항의 상거래가 크게 부진하게 되자 부산주재 일본관리대리 산지성우장(山之城祐長)은 동년 10월 동래부를 찾아와 設課收稅가 조약에 위반된다고 강변하면서 停稅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 尹致和는 “조선정부가 조선상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여할 바가 못된다”고 일본측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이에 당황한 居留地會議所議員과 商人들이 10월 9일 辨察官 관저에서 시위를 벌리고, 다음날에는 일본관민 200여명이 동래부에서 정세를 요구하면서 대규모의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일본상인 중에는 흥기를 소유한 자가 많았고, 이들은 동래부 성문부근의 민가에까지 침입하여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격분한 동래부민들은 기와조각과 자갈 등으로 일본상인등에 대항하였다. 이 충돌사건을 접한 山之城祐長은 급히 부산 거류 일본관민을 동원하여 총검으로 무장시킨 다음 동래부로 달려왔으나, 이미 사건이 끝난 뒤였으므로 두모진 해관에 들러 시위를 벌린 다음 조계로 돌아갔다. 결국 이 사건은 일본측의 군함을 대동한 무력 위협으로 3개월 후인 12월 26일 부산해관이 폐

30) 金敬泰, <開港直後の 關稅權 回復問題—「釜山海關收稅事件」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8, 1972.

관됨으로서 결말지워졌다.<sup>31)</sup>

- ② 1880년 4월 26일 우리 沿海를 불법 시위하던 일본군함 鳳翔艦의 선장이하 士官·水兵 다수가 조선인 通譯을 대동하고 「遊歷」이라는 명목으로 동래부를 탐색하려 했다. 이들이 동래남문에 이르렀을 때 부사는 門을 닫고 이들의 불법을 꾸짖었고, 府民들은 門樓와 壁上에 모여 이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기어 이 강제로 통과하려하자 부민들은 분개하여 기왓장을 들고 이들과 맞섰다. 이 소식을 전해놓은 주변의 지방민들은 이곳으로 달려와 일인들과 일대 投石戰을 전개했다. 이에 그 기세에 눌린 일인들은 2명의 부상자를 이끌고 철수하고 말았다. 다음날 일본 선장은 드디어 武裝護衛兵 40명을 대동하고 동래남문을 강제 통과하여 동래성내를 확보하자 동래부민들은 그들의 불법적 행동에 비분강개할 뿐 더 이상 대항은 못했다.<sup>32)</sup>
- ③ 1884년 甲申政變 이후 釜山港民들의 抗日抵抗意識이 높아져 그해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주변 농민들이 쌀을 일본인에게 팔지 않아 쌀 수출이 격감했다. 또 이해 12월 17일에는 부산의 일인상인 小田移作과 莊司方作이 상품대금을 독촉하기 위해 固城郡 唐項浦에 갔다가 그곳 농민들로부터 무수히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산일본영사관에서는 경찰관을 파견하여 겨우 구출하였다.<sup>33)</sup>
- ④ 1880년 일인들의 간청에 의해 부산 溫泉場의 一部 사용을 일인들에게 허락하고 양국인의 분규를 막기 위해 日本監守所가 설치

31) 《釜山市史》第1卷, pp. 894~896.

32) 《釜山府史原稿》第11卷1 第4章 參照.

33) 《釜山府史原稿》第12卷 第9章 參照.



되었다. 그런데 1886년 9월 27일 세명의 조선 여인이 감수관 앞을 지나 갔을 때 감수인 杉原好助가 한 명의 여인을 감수소 내실로 납치하여 옥보이려 하였다. 이를 전해들은 이곳 洞民 20여명이 몽둥이를 들고 감수관 내실로 들어가 여인을 구출한 후 감수소 家財道具를 모조리 파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극도로 흥분한 군중들이라 軍官도 수습할 도리가 없어 방관하였다. 당시 동래부사 金鶴鎭도 분격하여 溫泉監守所의 철수를 일본영사에게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영사는 결국 불응하였다.<sup>34)</sup> 그 후에도 이런류의 港民들과 일인들과의 충돌사건은 허다하였다. 그럴 때마다 일본은 함포를 대동한 무력으로 대응하였다.

- ⑤ 개항후 일인과의 무수한 충돌사건을 겪고 東學農民革命과 義兵蜂起를 접한 부산항민들의 抗日抵抗意識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 義兵將 優先 崔益鉉이 淳昌戰鬪에서 일군에게 체포되어 감금당했다가 대마도에 유배 당하여 1906년 11월 17일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靈柩가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부산항민들은 閉門撤市하고 商務社員 1,000여명은 「春秋大義 日月高忠」이라고 쓴 挽旗를 높이 들고 영구를 맞이하였으며, 이곳에 운집한 10,000여명의 항민은 모두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심지어 동래부의 기생들도 국문으로 挽章을 지어 올려 통곡했고 梵魚寺의 僧 奉蓮도 僧徒를 거느리고 致奠를 올렸다. 그리고 부산항에 거주했던 寡婦 셋이 奠物을 머리에 이고 40리 길을 달려와 말하기를 「大監祭需는 日本人車에 실을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또 對馬島의 경비대장 이즈하라(嚴原)가 賻儀 200兩을 보내왔으

34) 《釜山府史原稿》第14卷 第8章.

나 이를 완강히 거절하기도 했다. 일본측은 이러한 抗日運動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구를 기차에 싣고 馬山까지 運樞하려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陸路로 운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영구는 육로로 운구되어 魯城郡에 安葬케 되었다.<sup>35)</sup>

이와 같은 부산지방민의 항일저항의식은 애국계몽운동기에 국권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國債補償運動의 적극적인 동참으로도 표출되었다.

## 6. 맺음 말

사실 일반적으로 居留地란 개방된 일정한 지역내에 외국인이 와서 居住하면서 상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거주와 상업이란 경제적인 활동만을 주로 하는 곳을 일컫는다. 그런데 부산을 비롯한 일본전관거류지만이 침략성을 가진 전관거류지로서 거류지문제에 대해서는 第3國의 커다란 방해나 위협 없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일본거류지는 治外法權國으로서의 日本領事가 행정상의 감독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채 운영되었다. 부산의 일본전관거류지는 개항 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정된 조계지로서 치외법권을 인정받고 領土分割의 형태를 취한 特殊地域으로 변모하여 일본의 세력부식과 상품시장화를 위한 前哨基地로 충분히 활용되었다. 따라서 부산항은 일본거류지를 구심점으로 일본침략세력에 의한 강한 힘으로 도시계획이 추진되어 우리 부산지방민의 입장과 의사가 전적으로 무시된 채 近代都市로 형성되었다.

이와같은 변화는 거주민들의 이동 변화에서 잘 나타난다. 예컨대 개

35) 《독립운동사》 第1卷, pp. 645~653.

항당시 草梁에 100여호, 古館에 150여호, 釜山鎭에 400여호가 居住하였는데, 그로부터 30년 후인 1905년 경에는 일본전관거류지가 설정되었던 초량은 400여호, 고관은 200여호, 부산진은 300여호로 부산지방민들은 차츰차츰 일본전관거류지 부근으로 밀집 이동해 갔다. 따라서 과거 부산포의 邊方僻地였던 草梁項(지금의 龍頭山일대)이 부산도시중심부로 형성돼 갔고 과거 부산포의 중심이었던 부산진이 오히려 邊地로 전락해 갔다. 그리고 부산지방의 토착민이 거주하는 촌락은 일본거류지내의 근대적 문명시설과 웅장한 고층건물과는 대조적으로 草家집이 운집한 중세적 촌락형태를 오래도록 유지하였다.<sup>36)</sup>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 부산항의 주체적 발전을 위해 近代 釜山港形成의 역사적 배경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항 후 일본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침략행위를 목도한 부산항민들의 抗日抵抗意識은 고조되었다. 그래서 對日人鬪爭事件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36) 金義煥, 〈開港後 釜山日本專管居留地 設定에 關한 研究〉《韓日研究》第2輯, p. 110.